

군청사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13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0. 10

(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부과장 히 길 중

나. 제안사유

- 군청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 증축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취득계획대상토지

(단위:m', 천원)

구분	토지소재지		지번	지목	취득면적 (건물)	재산가액 (건물분)	비고
	읍면	리					
변경	화순	훈리	37-1번지외 6	대지	1,318 (962.0)	695,791 (84,207)	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
당초	화순	훈리	46-2	대지	1,058	1,227,280	

- 변경사유: 화순단위농협 동부지소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적극적인 매각 의사가 없어 군청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조기에 청사증축을 완료코자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당초 화순단위농협 동부지소 부지를 매입코자 한 것을 구 선거관리위원회 뒤편 토지를 대신 매입하고자 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

서,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결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군청사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